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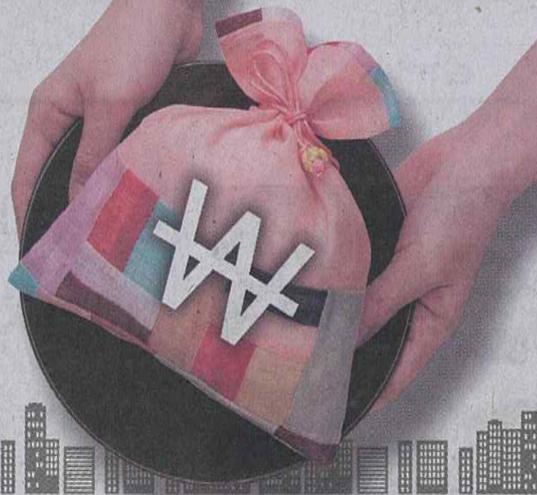
한림성심대-건설협회 도회 인재 양성 협약 한림성심대(총장:우형식)와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오인철)는 10일 한림성심대 국제회의실에서 산학협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2017.1.11(수) 강원도민일보 】



정부, 설 민생대책 마련

정부가 설을 맞아 공사대금 조기 현금지급에 나선다. 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567억' 공사대금 조기 현금지급 하도급대금 체불, 과징금 등 제재

우선 정부는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청구일로부터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검사완료일로부터 5~7일 이후 지급했던 대금을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567억원 규모의 조달청 관리 건설현장 하도급대금을 설 전 조기 현금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2~3차를 포함한 하도급업체에 대금이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소속·산하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실시한 하도급대금 체불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금 체불 해소를 독려하고 위반사례에 대해선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와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 발주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대한건설협회 등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대금의 설 전 현금지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상으

기성·준공검사기간 7일로 단축
중소 대상 22조 규모 자금 지원
생활물가안정 방안도 추진키로

로 총 22조원 규모의 설 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작년 설(21조2000억원)에 비해 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설 자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시중은행이 16조5400억원을 공급하고 국책은행이 3조9700억원, 중소기업청이 4000억원, 한국은행이 2600억원을 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85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애로로 겪고 있는 중소기업사업자에 부가세 등의 납기를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징수체납처분도 각각 최대 9개월,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설 전에 임금체불을 최대한 해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고액체불·상습체불·재산은닉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한 사법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대검찰청 공안부는 설을 앞두고 종업원의 임금을 상습적·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정부는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감독관을 지정·운영하고 체불근로자에 대한 소액체당금은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설 이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시설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밀집 시설, 안전사고 우려 시설 등에 대한 범정부 사전 특별점검을 강화해 설 연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촉진과 생활물가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포장·실속상품을 개발하고 농산물 등 설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로 설 선물 수요 위축 가능성 등에 따라 체감경기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경기 둔화 때 더욱 큰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협 강원도회, 한림성심대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와 한림성심대학교는 10일 오후 4시 한림성심대 국제회의실에서 상호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건설업체와 대학 간 기술·인력·장비의 상호이용,

산학 협력 공동연구·개발, 취업 정보의 상호 교류,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과 상호협력, 학생의 현장실습 및 인턴십 제도 운영협력 등이 담겼다. 도회 측은 이번 협약이 “도내 건설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양성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미지급·하도급대금 미보증
불공정 하도급거래 새 유형 ‘정조준’

공정위, 위반행위 실태점검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미지급과 하도급대금 미보증을 정조준한다.

공정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거래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 하도급거래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에선 또 다른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으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미지급과 하도급대금 미보증 등을 제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안전관리비 미지급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수급사업자의 안전관리비를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일반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과 함께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미지급을 중점 점검해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원사업자가 안전관리비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도급대금 미보증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이 수급사업자에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위탁내용 변경 과정에서 서면 미교부를 통한 대금 미정산, 부당특약 설정 관행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1만1347개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 설문조사에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수는 665개로 전년(820개)보다 19% 감소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대금 미지급은 8.0%(162개→149개), 부당감액·반품·위탁취소·기술 유용 등 4개 유형의 행위는 23.8%(551개→420개), 부당특약은 10.3%(107개→96개) 줄었다.

설문에 응한 하도급업체 중 97.2%가 전년에 비해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됐다고 답했고 하도급업체들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하도급거래 실태 점수는 전년(75.7점)에 비해 3.5점 상승한 79.2점을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이 하도급거래 개선을 보다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